

제 8 장 입소자 및 이용자

제105조(입소 및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와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한다.

제106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보호의 정원은 17명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17명 이내로 한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정원은 최소 17명 이하로 하되 시설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모집방법) 입소자 및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08조(계약)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단기·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변경기록지
2. 입소(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전염성 질환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09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10조(입소 또는 이용료)

-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②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1. 식재료비
 - 2. 이·미용비
 -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④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1조(입소 또는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입소자 등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 5.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 6.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 7.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 8.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 9. 가족, 친구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 10. 시설 이용시 외부방문자로부터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5~10항 신설2014.09.01>

제113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입소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114조(급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제115조(배상책임)

- ① 시설의 직원이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6조(면책)

- ① 제1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17조(특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기준)

- ① 입수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시 타이용자,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시
 2. 대체할만한 케어방법이 없거나 증세완화 목적으로 긴급할 시
-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7조의 2(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의료적 처치 즉 욕창소독등으로 나온 폐기물은 의료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병원 진료시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 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가벼운 질병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센터로 복귀한다.

제117조의 3(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담당자에 의해 대처하고 보호자와 센터장이 협의하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확인서 작성 후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117조의 4(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로 한다.

③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시 고치도록 한다.

제118조(의료급여의 제공)

①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입소자,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등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시설물 등의 사용)

① 입소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입소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입소자,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 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입소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의 등급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등급외자로 변경 시 보호자와 조정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제120조의1(계약의 정지) 제120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자(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1조(사망) 입소자 사망 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자의 의견이 보호자나 원장의 의견에 우선한다.
- ② 사망발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제122조(건강진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는 년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23조(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 ④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 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 ⑥ 입소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4조(생활지도)

- ①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입소자나 이용자의 생활지도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② 시설 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